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이인식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51
------	------

발의일자 : 2024. 5. 28.

발 의 자 : 이인식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의원

도병두 의원

1. 제안이유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출입 보장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생활권과 삶의 질 향상 및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관련 사업(안 제4조)

라.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0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5. 29. ~ 2024.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건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건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건”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건표지를 발급 받은 보조건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건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조건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건 보급·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건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조건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
2. ‘보조건 출입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건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
4. 장애인 보조건 훈련·보급 등 정보제공
5. 그 밖에 보조건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건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4. 5. 14.] [법률 제20290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